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채용된 모든 임직원이 법령이나 사회적 규범을 지켜 사회적 책임에 근거한 기업 활동을 행하기 위한 규범과 행동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임직원은 윤리규정을 실천하므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당사에 근무하는 것에 긍지와 만족, 그리고 자각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기업윤리규범

임직원이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보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3.2 기업행동기준

임직원이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기업윤리규범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다.

4. 기업윤리규범

경영기본방침을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업윤리규범(이하 '본 규범'이라 한다.)을 정한다. 임직원은 이 본 규범에 근거하여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권을 존중 하고, 관계법령과 국제법 및 그 정신을 준수하는 동시에 환경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창조를 향해서 자주적으로 행동한다.

4.1 사회적으로 유용한 제품·서비스를 안전성이나 개인정보·고객정보의 보호를 충분히 배려해서 개발·제공하여 소비자 및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획득한다.

4.2 공정·투명·자유로운 경쟁 및 적정한 거래를 행한다. 또, 정치·행정과의 건전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관련규정		주관부서	인사지원실	
		작 성	검 토	승 인

4.3 사원의 다양성·인격·개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일하기 쉬운 환경을 확보하고 융통성과 풍부함을 실현하며 비인도적행위와 사생활침해, 직장 내 괴롭힘등을 금지한다.

4.4 환경 문제의 대처는 인류공통의 과제이며 기업의 존재와 활동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인식하고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4.5 '훌륭한 기업시민'으로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

4.6 시민사회의 질서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세력 및 단체와는 단호하게 배격한다.

4.7 국제적인 사업 활동에 있어서는 국제법이나 현지의 법률 준수는 물론, 현지의 문화나 관습을 존중하고 그 지역의 발전에 공헌하는 경영을 행한다.

4.8 경영진은 본규범 정신의 실현이 스스로의 역할임을 인식하고 솔선수범하여 사내에 철저히 하는 동시에 거래처에 주지시킨다. 또 사내외의 목소리를 항상 파악하여 실효성이 있는 사내체제의 정비와 함께 기업윤리의 철저를 도모한다.

4.9 본 규범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경영자 스스로가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자세를 내외에 제시하고,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에 노력한다. 또 사회에의 신속 정확한 정보의 공개와 설명의 책임을 수행하는 동시에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엄정한 처분을 행한다.

5. 기업행동기준

기업윤리규범을 기업 활동 안에서 구체화 해 가기 위하여, 상기 항목의 기업윤리규범에 대해서 기업행동기준 (이하 '본 기준'이라고 한다.)을 각각 책정하였다. 본 기준은, 임직원이 일상의 사업 활동을 행하면서 중요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구체적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다.

5.1 사회적으로 유용한 제품·서비스를 안전성이나 개인정보·고객정보의 보호를 충분히 배려해서 개발·제공하여 소비자 및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획득한다.

5.1.1 우수한 제품·서비스의 제공과 안전성에 관한 것

당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사회에서 요구되어 있는 것이 당사의 경제적 존립의 기반이므로, 이 기반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제품개발력이나 제조기술력의 향상에 노력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가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뛰어난 가치를 위해서는 그 자체가 안전하여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므로 회사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고객 니즈의 정확한 파악

사원 개개인이 항상 시장동향에 주의하고, 고객의 니즈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전 임직원이 고객 니즈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2) 안전성에 관한 법령, 가이드라인의 준수
제품의 결함에 의해 이용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생기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이런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 단계부터 설계, 제조, 유통 및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안전성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법령이나 공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준수한다.

3) 안전성에 관한 자주기준의 제정과 준수
법령이나 공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분야는, 각 부문에 있어서 실태에 입각해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주기준을 책정하는 동시에 이를 준수한다.

4) 피해확대의 방지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책무이므로 이를 완수해야만 한다.

5) 사고·트러블의 재발 방지
제품에 결함이 생겼을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고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과오가 되풀이 되게 된다. 사고·트러블의 원인규명과 그 기록이 회사 내의 관련 부서나 조직에 의해 적절하게 축적되고 이용됨으로써 이 후의 같은 사고나 트러블이 방지되게 된다. 따라서 각 부문의 책임자는 이러한 정보가 신속 이용 가능한 체제의 정비에 유념한다.

5.2 공정·투명·자유로운 경쟁 및 적정한 거래를 행한다. 또, 정치·행정과의 건전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5.2.1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유지 촉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유지와 촉진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경쟁사업자 간에서 가격이나 판매 수량을 서로 구속하는 카르텔 행위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과징금의 부과로부터 형벌이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위반 기업이 입는 손실은 아주 크다.
당사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국내는 물론 여러 국가의 독점금지 관련법을 준수한다.
조달 부문에 있어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거래처에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법에서 금지되고 있어 이것도 같이 준수하여야 한다.

5.2.2 거래처·관계처 와의 건전하고 양호한 관계

당사는 내외의 상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얻거나 하는 것을 엄히 경계한다. 임직원 개개인은 사회로부터 오해나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옳은 판단과 절도 있는 행동을 취한다.

1) 판매 거래처와의 관계

판매처에 대한 접대나 선물에 대해서는 사회적 상식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또, 개인적이거나 함부로 리베이트(가격인하 등)나 커미션 등의 편의제공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 회사로서 정식으로 실시하는 편의제공은 어디까지나 사내 정규 결재선에 준해서 실시한다.

2) 조달처와의 관계

조달처의 선정에 있어서는 가격, 품질, 납기 등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실시한다.
조달처로부터 접대 등은 사회적 상식의 범위내로서 그 범위를 넘는 것은 즉시 사양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3) 관계회사 · 협력회사와의 관계

관계회사나 협력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제3자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근거로 한 거래조건과 비교하고, 부당하게 다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접대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상식의 범위내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이익상반 행위의 금지

임직원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대립하거나 혹은 대립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경우나 혹은 생길 경우는 상사 혹은 관련부서(인사지원실) 등에 보고한다.

5.2.3 지적재산권의 보호

지적재산권이란 지적활동에 의해 생겨난 창조물이나 영업상의 신용에 관한 권리로, 법률에 의해 명확히 권리로서 정해져 있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서비스 등의 산업재산권, 예술작품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이나 그 외 회사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노하우(know-how), 기술, 영업정보 등의 기업비밀이 이것에 포함된다.
지적재산권은 기업에 있어서는 가치를 만들어 내는 원천이며 세계적으로 폭넓게 보호되고 있다. 이에 당사 임직원은 지적재산권의 창조와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또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1) 당사에 귀속하는 기업비밀의 취급

기업비밀에는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있지만, 기업비밀이 외부에 누설됨으로써 당사의 이익이나 신용 등에 손해를 입히는 수가 있다. 누설 형태는 문서에 한하지 않고 전자매체나 물품 자체 또는 기타 구두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기업비밀의 관리상 중요한 것은 어느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해야 할지를 명확히 구분

하고, 제3자도 알 수 있도록 그 기밀수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2) 타인의 지적 재산권의 취급
당사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당사의 물건과 똑같이 존중한다. 또, 부정하게 입수된 타인의 기업비밀을 사용하면, 지적재산관련 법규에 저촉되며, 나아가 관련 법규 위반이나 민사상의 불법 행위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3) 회사자산의 보전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사내정보 시스템이나 기타 유무형의 회사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안된다. 또, 임직원이 퇴직할 때는 회사자산, 업무상의 모든 기밀정보 및 자료 등을 반환한다. 재직 중에 얻은 영업기밀 기타 기업정보를 회사의 허가없이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5.2.4 외환 및 외국 무역법
수출업무에 관계된 담당자는 무역관리에 관한 사내·외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여, 외환 및 무역 등의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2.5 정치 및 행정과의 관계

1) 뇌물 등을 둘러싼 금지령
국내외의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해서 부정한 이익의 제공은 절대 하지 않는다.

2) 정치자금 규정법 및 공직 선거법
정치자금 규정 및 공직 선거법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기업으로서 정치활동에 관한 공명성과 공정함을 확보한다.

5.3 사원의 다양성·인격·개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일하기 쉬운 환경을 확보하고 융통성과 풍부함을 실현한다.

5.3.1 사원의 인격·개성의 존중
당사는 사원의 인격이나 개성을 존중하고, 풍부함과 성취감을 실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에 노력한다. 또한 성과·실적주의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를 행하는 동시에 전문성과 창조성이 많고 개성 넘치는 인재를 육성한다.

5.3.2 프라이버시의 존중
당사는 사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의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는 신중하고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적정한 관리에 노력한다.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루는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기업의 신뢰성 확보의 기본이다. 정보의 유용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관리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5.3.3 인권의 존중과 모든 차별적 취급의 금지

당사는 인종, 신조, 피부의 색, 성별, 종교, 국적, 언어, 신체적 특징, 재산, 출신지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차별함을 받지 않는 건전한 직장환경을 확보한다. 특히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로서 용인하지 않는다.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피해자의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한다.

5.3.4 안전으로 건전한 직장환경의 확보

당사는 모든 사업활동을 비롯해 제조기계, 부품, 자재 등의 사용에서 폐기에 이르는 모든 프로세스에 있어서 사람의 안전, 건강의 확보를 최우선 한다. 그 때문에 관련되는 각종 법령의 준수를 비롯해서 사내의 규정, 매뉴얼, 작업표준 등을 정비하고 이것을 준수한다.

5.3.5 산업재해의 예방

사람의 안전과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므로 산업재해의 예방으로 관계법령은 물론,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사내규정과 규칙 등의 룰을 준수하는 것이 대전제가 된다. 또, 일상의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위험성과 유해성을 미연에 살피고 제거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철저하게 배제하는 행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5.4 녹색경영 문제의 대처는 인류공통의 과제이며 기업의 존재와 활동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인식하고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5.4.1 녹색경영의 실천

당사는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원·에너지를 포함하여 이 지구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지구환경을 보다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스스로 의무라는 자각을 가지는 동시에, 이 대처가 중요한 경영과제의 하나로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경영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사업활동이나 제공하는 제품·서비스가 지구전체의 환경에 가능한 한 부하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녹색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 환경보전과 방재

환경관련 법령의 준수는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는 중대한 기업의 의무이므로, 당사 및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녹색경영 규정과 메뉴얼을 업무수행에 활용한다.
또한 재해의 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피해확대의 저지를 위해 방재관련 규정을 임직원 개개인이 확실히 체크하고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5.5 '훌륭한 기업시민'으로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

5.5.1 지역공헌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연대와 강조를 꾀하여 양호한 관계의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교류 및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힘쓴다.

5.6 시민사회의 질서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세력 및 단체와는 단호하게 배격한다.

5.6.1 반사회적 세력과의 절연

당사는 사회적 질서나 기업의 건전한 활동에 악영향을 주는 모든 개인과 단체와는 일절 관계하지 않는다. 특히, 경영에 관계하는 자는 이러한 세력을 두려워 하지말고 의연한 태도로 대응하여야 한다.

5.7 국제적인 사업 활동에 있어서는 국제법이나 현지의 법률 준수는 물론, 현지의 문화나 관습을 존중하고 그 지역의 발전에 공헌하는 경영을 행한다.

5.7.1 해외에 있어서의 사업활동에 관한 것

경제의 글로벌시대에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전개해 가기 위해서는 국제룰이나 현지법의 준수는 물론, 현지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 지역의 발전에 또 해당국의 법령을 충분히 조사해서 준수 할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 방지법 (외국공무원에게 이익제공의 금지)이나 외환 및 외국 무역법 등의 국내법을 현지기업이 이해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또 당사는 현지가 안은 사회 사정이나 고유한 문제를 이해하고, 문화나 관습에 충분히 배려한 사업활동을 행한다.

5.8 경영진은 본규범 정신의 실현이 스스로의 역할임을 인식하고 솔선수범하여 사내에 철저히 하는 동시에 거래처에 주지시킨다. 또 사내외의 목소리를 항상 파악하여 실효성이 있는 사내체제의 정비와 함께 기업윤리의 철저를 도모한다.

5.8.1 사내외에의 주지 철저와 정착화

기업윤리 규정을 인트라넷에 게재하고 주지 철저를 도모한다. 그리고 필요시 개별적, 구체적인 법령준수교육을 적절히 실시한다.

5.8.2 실시 체제

기업윤리 규정의 실천은 필요할 때마다 소속부서의 상사에게 상의 하거나, 개선을 위해 상사와 차분하게 상담을 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상사는 이러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어,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또한 각 부서 내에서 해결이 곤란한 문제나 상사에게 상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임원이나 경영진에 상의한다.

5.8.3 위험 및 준법감시 관리위원회

위험 및 준법감시 관리위원회는 이사진으로 구성되며,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상의, 결의, 권고조치를 취한다.

5.8.4 윤리상담

각 부서 내에서 해결이 곤란한 문제나, 상사에게 상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는 문제에 관해서는 사내 담당자(인사지원실장)나 경영진에 상의한다.

5.9 본 규범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경영자 스스로가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자세를 내외에 제시하고,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에 노력한다. 또 사회에의 신속 정확한 정보의 공개와 설명의 책임을 수행하는 동시에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엄정한 처분을 행한다.

5.9.1 경영자에 의한 대처

경영자는 기업윤리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의 확대 방지와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또, 경영자 스스로 지휘하여 신속하게 사실조사, 원인규명, 재발방지책의 수립 등을 실시함으로 기업으로서의 책임 있는 적절한 대응을 제시 한다. 만일,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이 위험에 노출될 경우에는, 사회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실시한다. 아울러 책임의 소재를 신속하게 밝히고 엄정한 처분을 행한다.

5.9.2 기업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악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 행해진 기업윤리규정위반 행위는 사내규정에 준해서 엄격히 처분 되는 동시에 회사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사내 고발 및 신고

기업윤리규정 및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나 우려되는 행위에 대하여 소속 조직 내에서 개선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본 고발 및 신고 제도를 이용한다.

6.1 사내 고발 및 신고 범위

1) 안전 및 건강에 위험한 행위 또는 우려되는 행위
2) 지역 환경의 악화 또는 우려되는 행위
3) 기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
4) 회사의 명예 실추와 사회적 신용 침해
5) 내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6) 인사문제는 제외

6.2 제보자의 보호

1) 제보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2) 제보자의 정보는 관계자외에공개하지 않으며 내부시스템 접근도 제한됩니다.

3) 제보자에게 신분 또는 인사상 불이익, 업무배제, 차별, 괴롭힘 등 어떤 방식의 보복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6.3 처리절차

신고(전화, 전자메일, 서면 등)
↓
접수(사실 확인을 위해 실명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익명도 가능)
↓
내부 총괄책임자 또는 경영진에 신고
↓
접수된 내용의 확인 조사 필요성 검토
↓
공정한 조사 실시
↓
조사결과 보고 및 대응책 결의
↓
신고자에게 통보(신고자 보호)
↓
대응책 실시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관리절차]

이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의 절차는 회사표준 관리 규정 (KOS－A－0330)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